

성동청소년센터 2022년 제11차 직원 채용 연장공고

우리 센터에서 창의적 사고와 일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고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지원바랍니다.

2022년 06월 08일
성동청소년센터 관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가. 채용분야 및 인원 : 총 2명

| 직군(직급) |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및 근로조건 |
|--------|--------------------------|----|--|
| 계약직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PM | 1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처 : 성동청소년센터 · 주요업무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총괄 (PM) 업무 · 채용직급 : 계약직 · 근무시간 : 주40시간 근무 (월~금 11:00~20:00)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 2022.12.31. (1년 단위 계약) · 보수조건 : 월2,133,000원 (청소년지도사 급수별 자격수당 별도 지급) |
| 계약직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SM | 1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처 : 성동청소년센터 · 주요업무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담임 (SM) 업무 · 채용직급 : 계약직 · 근무시간 : 주40시간 근무 (월~금 11:00~20:00)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 2022.12.31. (1년 단위 계약) · 보수조건 : 월1,915,000원 (청소년지도사 급수별 자격수당 별도 지급) |

- 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령에 따라 가입
-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연금제도(DC) 가입
- 각 채용분야별 근무여건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시설 운영상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무,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음

2. 응시 자격

가. 응시자격 기준

| 채용분야 |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PM | 필수 사항 | - 2022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 자격요건 해당자 ① 해당 자격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 ② 청소년육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 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청소년육성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위의 ①~②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시 재공고를 통해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의 장은 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①~④ 요건 중 자격증을 제외한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사 또는 동등한 자격으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
| | 우대 사항 | - 청소년센터 경력자 및 해당 직무 경력자 우대 |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SM | 필수 사항 | - 2022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 담임 자격요건 해당자 ①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②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④ 청소년 육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및 졸업예정자 *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복지학 등 ⑤ 청소년 육성업무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위 자격요건 각 ①~⑤ 중 1개 이상 해당자 |
| | 우대 사항 | - 청소년센터 경력자 및 해당 직무 경력자 우대 |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분야] 1.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한 경력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경력 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제7조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5.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받은 기관에 근무한 경력 6.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보호·재활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의 규정에 의한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8.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에서 확정하여 시행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근무한 경력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설치·지정한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 11. 「아동복지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한 경력과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제3조제11호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1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교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관 등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12의1. 시·도 교육청 조례에 의거 설치된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등에서 청소년활동 업무에 종사한 경력 12의2.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된 Wee 스쿨, Wee 센터, Wee 클래스에서 지도·상담 등의 업무로 채용되어 종사한 경력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중 '청소년 지원시설'에 종사한 경력 14. 「경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 및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과)에서 청소년보호·지도 업무에 종사한 경력 | | |

나. 제한요건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지정일로부터 근무가능한 자
- 센터 운영규정 제1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자

제 13 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하며, 채용 후 그 사실이 밝혀지면 채용을 취소한다.

- ① 국가 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② 병역법상의 병역의무 기피자

3. 채용전형

가. 1차 서류전형

- 심사 평가항목
 - 서류전형

| | | | | | | |
|--|----------------------------|-----|------|----------------|------|--------------|
| 적격여부 | - 제출서류 허위 기재 및 제출서류 누락시킨 자 | | | | | |
| 구분 | 입사지원서 | | | 자기기술서 | | |
| 평가항목 | 학력사항 | 자격증 | 경력사항 | 목표의식 및 입사포부 | 경력기술 | 적응성 및 가능성 |
| 배점 | 10 | 10 | 20 | 20 | 20 | 20 |
| ※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많을 경우 해당공고 채용인원의 최종합격자의 3~5배수 이내 선별 ※ 서류전형이 동일점수의 경우 자기기술서 평가항목의 고득점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 | | | | |

나. 2차 면접전형

- 면접전형

| | | | | | |
|------|---------|---------------|--------------|---------------|-------------|
| 평가항목 | 성품 및 성격 | 기본자질 및 성실성 | 적응성 및 가능성 | 대처능력 및 표현력 | 채용분야 전문성 |
| 배점 | 5 | 5 | 5 | 5 | 5 |

다. 최종합격자 결정

- 2차 면접전형 최고 득점자 순으로 결정
- 전형일정 및 결과는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 통보

4. 채용일정

※ 채용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가. 진행절차

| 구 분 | 내 용 |
|-----------|---|
| 채용공고 | ○ 공고기간 : 2022.06.08.(수) ~ 2022.06.22.(수) / 15일간 ○ 공 고 처 : 센터 홈페이지, 한수협, 서청협, 서울일자리포털 등 |
| 원서접수 | ○ 접수기간 : 2022.06.08.(수) ~ 2022.06.22.(수) 18:00까지 / 15일간 ○ 접수방법 : 이메일, 우편 중 택 1 ○ 접 수 처 - 이메일 : insa4062@sdyc.or.kr - 우 편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260 성동청소년센터 업무지원팀 인사담당자 앞 - 방 문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260 성동청소년센터 업무지원팀 인사담당자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 1차 서류전형 | ○ 합격자 발표 : 2022.06.23.(목) 예정 ※ 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 2차 면접전형 | ○ 면접전형 : 2022.06.29.(수) 예정 ※ 면접일정 및 장소 별도 개별 통보 |
| 최종 합격자 발표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06.30.(목) 예정 |
| 임용예정일 | ○ 임용예정일 : 2022.07.01.(금) 예정 |

- 합격자 발표는 합격자 개별통보 및 센터홈페이지(<http://www.sdyc.or.kr>)에 공고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5. 제출서류

가. 기본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비고 |
|----------------------------|---|-----------------------|
| 입사지원서 | ○ 자사양식, 작성방법 참고 | 필 수 |
| 자기소개서 | ○ 자사양식, 작성방법 참고 | 필 수 |
| 개인정보동의서 | ○ 자사양식 | 필 수 |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최종출신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필 수 |
|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경력 증빙 * 증명서에는 근무기간·부서·직책·담당업무, 발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성명·날인, 연락처가 있어야 함 | 해당자에 한함 (경력직 필수제출) |
| | ○ 해당분야 경력, 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확인서* 제출 *국민연금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안정센터 (고용보험) 중 1개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경력직 필수제출) |
| 자격증 사본 |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 자격취득예정일 경우 취득예정 관련 서류 제출 | 해당자에 한함 (경력직 필수제출) |

나. 지원자 유의사항

- 지원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 후 입사지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상 기재착오 및 누락, 자격 부적격자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 게시합니다.
- 채용전형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류 내 기재되어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해당자에 한함) 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첨부된 자사양식으로 작성하며, 자사 양식이 아닐 경우 접수 불가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에라도 인력수급여건상 채용이 불필요한 사유가 발생 될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하여 내방 또는 우편접수의 방법으로 제출한 채용서류의 경우 면접전형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제출서류를 반환하되 반환에 소요되는 금액은 응시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폐기합니다.
(단, 제7조1항에 따라 이메일 접수의 경우는 서류 반환 하지 않음)

문의 : 성동청소년센터 ☎ 02-2296-4062 (내선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 주 소 | |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 반환청구서류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성동청소년센터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